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8월 3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

2. 개정이유

-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부서가 개편됨에 따라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고흥군 행정기구 일부 개편으로 부서명칭 현행화
 -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(안 제3조제2항제2호)
 - 2. 행정자치위원회
 - 기획실, 주민복지과, 군정혁신단, 재무과, 공정허가과,-----
 - ⇒ 기획실, 주민복지과, 군정혁신단, 재무과, 민원토지과, 공정허가과,-----

4. 예고기간: 2021. 8. 31. ~ 9. 6. 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. 9. 6.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기관·단체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제출처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

- 전 화: 061-830-6065 (FAX 061-830-5595)

- 제출방법: 우편, FAX, 직접방문

붙임 1.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연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1. 8. .
발 의 자: 이연숙, 박미옥, 류동철
김민열, 이재학

1. 제안이유

-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부서가 개편됨에 따라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고흥군 행정기구 일부 개편으로 부서명칭 현행화
 -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(안 제3조제2항제2호)
 - 2. 행정자치위원회
 - 기획실, 주민복지과, 군정혁신단, 재무과, 공정허가과,-----
 - ⇨ 기획실, 주민복지과, 군정혁신단, 재무과, 민원토지과, 공정허가과,-----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관련 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
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

조례 제 호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공정허가과”를 “민원토지과, 공정허가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소관) ① (생 략)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.
1. (생 략) 2.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실, 주민복지과, 군정혁신단, 행정과, 재무과, <u>공정허가과</u> , 인구정책과, 문화예술과, 여성청소년과, 보건소,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민원토지과</u> , <u>공정허가과</u> , ----- 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내 용	의 견	비 고